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관련 안내

갑상선영상의학회 보험위원회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 (=진단 초음파)와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 (=유도 초음파)의 급여가 확대 시행됩니다.

대한 갑상선 영상의학회에서는 회원님들이 진료에 적용하실 수 있는 안내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회람합니다.

향후 초음파 급여 관련 추가 개정 소식이나, 회원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생기면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갑상선 영상의학회 홈페이지 QnA 게시판 (http://www.thyroidimaging.kr//bbs/index.html?code=qna)에 올려주시거나 KCR 2016 에서 친구로 맺으신 갑영회 카톡 옐로우 아이디 (http://plus.kakao.com/home/@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선초음파

어떤 환자들에게 갑상선 초음파를 보험으로 해 드려야 하나요?

1. 갑상선암 환자 또는 갑상선 암 의심자가 초음파 보험 대상입니다.
2. 어떤 환자가 갑상선암 의심자인가요?
   A. 기본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i. 타병원에서 갑상선결절이 발견되어 전원 되어 오신 분들은 대부분 갑상선암이 의심되어 초음파를 했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ii. 증상 중에서 갑상선암 의심 소견은 만져지는 멍울, 쉰 목소리 등입니다.
      iii. 심평원에서 배포한 QnA 에서는 갑상선기능이상이나 심한 체중 감소도 의심 소견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같은 환자가 초음파를 여러 번 하면 계속 보험 적용이 되나요?

A. 갑상선암 중증 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경우 회수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의 수술 전, 후 1회, 연간 2회 기준이 10월 1일부터는 없어집니다.

B. 임상 증상이 있어 갑상선암 의심자로 보험 적용을 받은 경우엔 같은 이유로는 1회만 인정됩니다.

갑상선초음파의 보험 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1. 2017년 기준, 의원 수가는 69,656원, 상급 종합병원 수가는 72.124원입니다.

보험으로 검사 후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갑상선 초음파의 코드는 EB413 (경부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입니다.

주의사항

1. 꼭 보험으로 해 드려야 하는 경우

A. 갑상선 암으로 중증 질환 등록된 분들은 꼭 보험으로 해 드려야 합니다.

B. 누가 봐도 갑상선 암 의심이 명백한 경우는 꼭 보험으로 해 드려야 합니다. 단지, 그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만 이견 없이 동의할 수 있는 경우로는

i. 타병원 검사, 또는 타 영상 검사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정밀 검사를 권고 받은 경우라면 이견 없이 갑상선암 의심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ii. 임상 증상과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2. 보험으로 해 드리면 안 되는 경우

A. 무증상 환자가 검진을 목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B. 갑상선암 의심 소견이 있어 이미 보험으로 검사를 받은 분이 추적검사 하는 경우, 같은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기간이 많이 지나도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갑상선 질환으로 갑상선, 부갑상선과 경부를 같이 검사한 경우라도 EB413 (경부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과 EB414 (경부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를 같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갑상선에도 질병이 있고 침샘에도 질병이 있는 경우는 인접장기 가산으로 둘 중의 한 수가의 50%를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Doppler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초음파 검사 수가의 10%를 추가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도플러 초음파의 인정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사진과 판독문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탄성초음파와 조영증강 초음파는 갑상선 질환에서 아직 신의료기술로 등록된 바가 없어 아직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갑상선조직검사

어떤 환자들에게 조직검사를 보험으로 해 드려야 하나요?

1. 갑상선암 환자 또는 갑상선 암 의심자는 초음파 유도료를 보험으로 해 드려야 합니다.
2. 갑상선암 의심자의 기준

   A. 조직검사는 그 자체로서 암이 의심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조직검사를 하는 모든 환자의 초음파 유도료는 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갑상선 조직검사의 유도료 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1. 조직검사를 위한 초음파 유도의 명칭은 "유도 초음파" 입니다.
2. 유도 초음파는 난이도 별로 Ⅰ ~ Ⅳ 까지 네 단계가 있는데, 조직검사는 유도 (Ⅱ) 에 해당합니다.
3. 유도 초음파 (Ⅱ) 의 수가는 2017년 기준, 의원 80,627원, 상급 종합병원 83,486원입니다.

유도 초음파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기본적으로 기존에 청구하던 것과 같은데, 비급여로 받고 있던 초음파 유도료만 보험 급여 후 유도 초음파 (Ⅱ) 로 바꾸시면 됩니다.
2. 재료대 (예를 들어 총조직검사에 사용하는 gun)은 유도료에 임의로 추가하거나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직검사용 gun 의 수가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작업중입니다. 수가화가 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3. 청구할 때 JS013 란에 아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D/C8591/초음파상 암이 의심되어 세포검사 시행" 여기서

   D 는 해부학적 구분코드 (D=경부, A= 뇌...)

   C8591 은 갑상선침생검의 보험코드

   마지막은 구체적 사유

   입니다.

   JS013 입력란은 10월 1일 신설되는 란으로, JS013 란에 입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각 병원 EMR 팀이나, 의원의 경우 전자차트 업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청구 실례

   초음파 유도료: 유도 초음파 (Ⅱ) - EB562

JS013 란에 "D/C8591/초음파상 암이 의심되어 세포검사 시행"

+ 행위료: 갑상선침생검 - C8591

+ 병리 판독료

5. 유도 초음파의 전체 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유도 초음파 (Ⅱ): 83,486 원 + 갑상선침생검 (13,700원) + 병리 판독료 (13,840원) = 111,026 원

6. 갑상선 총생검 수가 신설 예정

   A. 갑상선침생검은 FNA에 해당하는 행위료입니다. 갑상선총생검이 신설되어 수개월 내 공포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수가는 6만원대 입니다.

   B. 생검용 gun 의 재료대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설 중에 있습니다.

   C. 갑상선총생검과 재료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갑상선 총생검의 수가는

   유도 초음파 (Ⅱ): 83,486 원 + 갑상선총생검 (65,000원 예상) + 재료대 (25,000원 예상) +병리 판독료 (13,840원) = 187,326원

주의 사항

1. 같은 날, 갑상선에서 한꺼번에 두 개의 결절을 채취하거나, 갑상선 결절과 경부 림프절을 채취하는 경우: 보험 급여는 1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알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병변에 대해, 조직검사 급여를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 각각 다른 날 한 개씩의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확인 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소작술, 고주파 절제술

알코올 소작술과 고주파절제술을 양성 종양에 대해 시행하는 경우 "암환자 또는 암의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비급여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 이 안내문은 대한갑상선 영상의학회 보험위원회에서 심평원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0월 1일 시행시 현장에서 안내와 다른 관행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고 지속적으로 학회와 소통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Korean Society of Thyroid Radiology